

1. 개정이유

「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」에 따라, 기본 교육과정 내 ‘일상생활 활동’이 신설되었음.

이에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‘일상생활 활동’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실시한 의사소통, 자립생활, 신체활동, 여가활동,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(안 제21조제2항 제7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소관부서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육부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: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의사소통, 자립생활, 신체활동, 여가활동,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) ① (생략)	제21조(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)
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(현행과 같음)
1. ~ 6.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
<신설>	1. ~ 6. (현행과 같음)
	7. <u>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:</u> <u>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의사소통, 자립생활, 신체활동, 여가활동,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</u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